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023. 4.



공정거래위원회

Contents

I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성격	1
2.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 개요	3
3. 적용 범위	6
1) 하도급거래	6
2) 기술자료	8

II 기술자료요구서

1.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개요	15
2. 기술자료요구서 항목별 설명	16
3. 기술자료요구서 예시	20

III 비밀유지계약서

1.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 개요	24
2. 비밀유지계약서 항목별 설명	25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및 작성예시	28

IV 질의 응답

1. 기술자료 해당여부	35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40
3. 기술자료요구서	42
4. 비밀유지계약서	45
5. 기술자료 유용행위	47

V 주요 법 위반 사례

-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8-339호) 50
- 에스티엑스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9-085호) 53
-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136호) 55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0-244호) 58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0-306호) 61
-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1-246호) 63
-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1-322호) 65
- 엘에스엠트론(주)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083호) 67
- 삼성에스디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106호) 70
- 쿠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126호) 73
- 피에이치에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239호) 76

VI 관련 법령

- 1. 하도급법 제12조의3 79
- 2.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 80
-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81

I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성격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통상 기업의 지식재산은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지식재산법령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 별도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는 하도급 거래라는 종속적 거래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노력의 산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 등록될 만큼 고도한 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자료로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보호 관련 입증 책임, 절차적 의무 등 주요 부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관련 법령 또한 개정되어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주요 개정 이력 〉

개정일자	개정 내용
2011.3.29	①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를 ‘요구’로 변경 ② 제2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 ③ 제12조의3 제1항(요구 금지)와 제3항(유용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한 제35조를 신설하고,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 ④ 제3항(유용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규정
2018.1.16	○ 기술자료의 정의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
2018.4.17	○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
2021.8.17	① 기술자료의 정의를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 ②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신설
2022.1.11	○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행위도 제12조의3 규제 대상임을 명확화

- 이에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하여 향후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중에서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은 제2항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최근 신설된 제3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는 현재까지 누적된 기술유용행위 관련 심결례 및 판례, 실제 민원 회신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 등도 포함하여 향후 사업자들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가이드라인의 질의응답 및 작성 예시 등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 개요 (제12조의3)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개관)**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제1항)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제4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제2항)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제3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요구 금지)**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의 제공 없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야 하고, 그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¹⁾

- 이러한 규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한 번 기술자료가 유출되고 나면 수급사업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한편,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첫째, 기술자료 요구 시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2항, 법 시행령 제7조의4)
- 둘째,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면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이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을 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3항, 법 시행령 제7조의4)
-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한편,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술자료 유용 금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 제12조의3 제4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 정당한 사유로 취득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32513판결 (고법 확정) 등

- 또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적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물론,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등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합니다.²⁾

- (위반 시 조치) 하도급법 제12조의3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하도급대금 2배 이내), 형사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2조의3 주요 내용(요약) 〉



2)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32513판결 (고법 확정)

3 적용 범위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제12조의3)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가 존재해야 하고, 관련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것을 납품·인도·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위탁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원사업자) ① 중소기업자³⁾가 아닌 사업자거나, ② 중소기업자라면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입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제조·수리위탁: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⁵⁾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 (제조 등 위탁)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4)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5) 단,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 또는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음.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구분	원사업자의 업	수급사업자의 업	예시
제조위탁	제조, 판매, 수리, 건설	제조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제조를 위탁
수리위탁	수리	수리	선박 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
건설위탁	건설	건설	건설 공사업자가 건설 공사를 위탁
용역위탁	용역	용역	영화 제작사가 영화 제작을 위탁

-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위)**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나, 계약 전에 발생한 행위라도 이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22. 10. 27. 선고 2021누 68874 판결(고법 확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다음 그 체결 후에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수급사업자가 체결 전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원사업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체결 전 요구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수급사업자의 의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데도 '최초 요구'라는 사실행위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요구행위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 및 요구행위가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점을 간과하고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해석론으로서 받아들이 수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의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 II. 2. 가항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위 심사지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②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의 원사업자의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내용 자체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있거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적용 대상이 된다.

- **(하도급 거래와의 관련성)**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하도급 거래와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하도급 거래가 존재하는 한, 기술자료 요구 등 행위와 관련된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기술자료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서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을 의미합니다.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경제적 유용성)

-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예시)

-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갖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대법 확정 2022두39178)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 (중략)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 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가미된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 볼 수 있습니다.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대법 확정 2020두47021)

이처럼 승인도에는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거나 참고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승인도를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 (비밀관리성)

-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암호 설정·시정장치·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예시)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 단,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은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밀관리성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고법 확정)

다) 하도급법령 및 피고의 심사지침을 고려한 기술자료의 개념

- (1) 하도급법령이 정한 기술자료의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화한 피고의 심사지침 내용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적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인 점, 하도급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피고의 심사지침 등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3)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입니다.

- 하도급거래의 특성 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 기술표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합니다.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대법 확정 2022두39178)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가미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의 제작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고 이 사건 하네스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원고의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대법 확정 2022두39178)

이 사건 ○○○ 도면은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 도면, 회로도, 기술표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기술 내용 자체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이 아니지만, △△ 도면을 기초로 회로도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부품에 적용되는 기술표준을 찾아내 반영하는 등으로 위 각 기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해 내는 것에는 수급사업자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 도면은 원고가 제공한 회로도, △△ 도면, 기술표준에는 없는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제조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령 이러한 방법이 기술적으로 최적의 방법임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작되어 장기간 오류 없이 작동해 온 부품의 제조 방법이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3가 이 사건 ○○○ 도면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또는 관련 기술·노하우의 습득이 가능해지거나 이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원사업자가 부품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여 부품 제조 과정의 노하우 및 기술이 반영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까지 원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해 실제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술자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서 상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는 전제 하에 기술유용행위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며,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시킨다는 이러한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관련 부당특약 예시)

- ①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설계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비 등이 아닌 단순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 ③ 원사업자의 위탁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예, 승인도) 등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원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II

기술자료요구서

1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개요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개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 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침 IV. 1. 나. (4),)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제공 및 활용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⁶⁾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 기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2 기술자료요구서 항목별 설명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표시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명칭 및 범위

- 제공 요구 기술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요구목적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사유와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가 어떠한 용도에 한정되어 사용되는지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고법 확정)

이 사건 기본동의서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술자료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되는 문서이다. 이 사건 기본동의서는 1)항부터 5)항까지로 구성되는데, 1)항의 ‘기술자료 내역’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공사 수행능력 입증자료’, ‘계약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급사업자의 계약대상 품목에 관련된 기술자료’라고 기재하고 있고, 2)항의 ‘요구 목적’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검증’,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점검’, ‘계약대상 품목이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점검 및 발주처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개별계약이 체결될 경우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자료를 요구 받게 되는지, 그러한 기술자료가 어떠한 용도에 한정되어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

6) 이 때 정당한 대가는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신규 기술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권리 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수급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의 소유자인지 여부 및 소유자가 아니라면 기술자료의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함), 상호간 요구 기술자료 관련 별도 사용 계약 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실시하였다면 그와 같은 계약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고법 확정)

4)항의 권리귀속 관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기본동의서는 ‘없음’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원고는 권리변동이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능한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이다).

○ 대가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기재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 시기나 방법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인도일 및 인도 방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시기와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

-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그 밖에 기술자료 요구 시 합의된 중요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음.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부분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월일 :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2. 5.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106호

살피건대,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중략)...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상 적법한 교부시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관한 협의를 마침으로써 원사업자가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할 기술자료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특정된 후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무조건 기술자료 수령 전에 교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기명날인 : 날인, 서명, 전자서명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효과 : 날인·서명 등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요구서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경우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사실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고법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 이 사건 기본동의서 및 POS의 교부로써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로써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요구 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기술자료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별도의 기술자료요구서로 교부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취지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참고사항

- **(일부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 규정된 기재사항은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 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함으로써 정당한 서면 교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 IV.1.(5) 예시2)
- **(기술자료 요구서 통합 발급)** 법령에 따른 서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별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 IV.1.(5) 예시3) 다만 이와 같이 통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정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을 통한 교부)** 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는 것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원사업자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수급사업자는 의견개진의 기회 없이 서명을 요구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1누68874 판결)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고법 확정)

나아가 이 사건 기본동의서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관하여 의견개진의 기회 없이 서명을 요구 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이 사건 기본동의서가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기술자료요구서의 보존

- 기술자료요구서는 거래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고)

3 기술자료요구서 예시

기술자료요구서(예시 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주)공정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02-123-4567	
	주 소	서울 종로구 ○○로 123 (00동)					
	담당자	성명	□□□	소속	본사부품구매팀	전화번호	02-123-4567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주)거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5-85-54321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031-987-6543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로 123 (00동)					
	담당자	성명	○○○	소속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987-6543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2022. 4. 10. 납품한 발전기 용접사양서(용접 사양, 철판두께만 포함, 그 외 내용 삭제하여 제출)							
2) 요구 목적							
- 납품받은 발전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발전기의 용접사양과 철판두께 등을 확인하여야 하자의 원인 파악이 가능하므로 해당 하자 확인을 위하여 요구함 - 납품받은 발전기가 (주)공정이 요구한 용접사양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후 용접 사양을 충족하였는지를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및 배상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구함 - 본 합의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자료는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표, 제공,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재된 기술자료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원사업자가 기재된 요구목적 외의 범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증빙자료〉							
1. 발전기 용접 부분 하자 검토보고서							

3) 권리 귀속 관계	(i)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ii)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iii)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 인지 여부, (iv)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i) 발전기 용접사양서는 현재 (주)거래 소유임. (ii) 기술이전계약은 체결된 바 없음. (iii)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기술자료가 아님. (iv) (주)공정은 해당 기술자료의 소유권 등 기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권리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	
4)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하자 확인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주)공정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주)공정은 (주)거래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요구목적의 범위 외로 사용하려 할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지급될 대가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함.	
5)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1. 인도일: 2022. 5. 31. 2. 인도방법: (주)공정 용접 담당자 ○○○○의 전자메일 ○○○○@kongjung.co.kr을 통해 암호화한 파일을 송부하기로 함. 동시에 같은 문서를 (주)공정 용접 담당자 ○○○○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기로 함.	
6)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기술자료 제공 관련 하기 내용으로 상호 협의 완료(증빙자료 : 회의록) 1. 2022. 4. 10. 납품한 발전기에 용접 부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협의하여 용접사양서(필요사항 외 삭제)를 제공하기로 협의 2. 이후 유사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주)거래가 (주)공정이 요구한 용접 사양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며, 이로 인한 책임 및 배상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접사양서의 해당 하자와 직결되는 부분을 요구함 3. 사용기한은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2022.5~2022.6월이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용접사양서 파일 및 오프라인으로 수취한 문서를 파기하기로 협의함 4. 기술자료 임치계약은 체결한 바 없음. 5. 본 합의서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되어야 함.	
원사업자 (주)공정과 수급사업자 (주)거래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전기 용접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25일⑧ 원사업자명 (주)공정 대표자 ○○○○ (인)⑨ 수급사업자명 (주) 거래 대표자 □□□ (인)	

기술자료요구서(예시 27)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주)공정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02-123-4567	
	주 소	서울 종로구 ○○로 123 (00동)					
	담당자	성명	□□□	소속	본사부품 구매팀	전화번호	02-123-4567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주)거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5-85-54321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031-987-6543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로 123 (00동)					
	담당자	성명	○○○	소속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987-6543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2022. 4. 10. 기술자료 취득 관련 계약에 따른 ○○금형도면 초안							
2) 요구 목적							
2022. 4. 10. 기술자료 취득 관련 계약 내용인 금형 제작도면 초안의 제공을 이행하고, 계약 내용대로 도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위 자료를 요구함.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형설계도 등을 제작하게 한 후 해당 기술자료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의 기술자료요구서 예시임

3) 권리 귀속 관계	(i)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ii)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iii)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iv)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i) 2022. 4. 10.자 계약에서 완성된 금형 제작도면은 그 제작비용과 해당 제작도면의 취득 관련 대금 o천만원을 2022.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가 취득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으며, 대금이 전부 지급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 (ii)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2022.4.10. 계약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협의함. (iii) 이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기술자료가 아님 (iv)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에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	
4)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총 대금은 o천만원이고, 2022. 4. 10. 계약금으로 o백만원을 계약일에, 2022. 7. 30. 잔금으로 o천만원을 oo금형제작도면과 해당 기술자료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계약금 및 잔금은 (주)거래 명의의 계좌 OO은행 000-00-00000000 로 송금하기로 함. 이 대가는 오로지 금형 제작도면과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원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요구한 바 없음.	
5)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1. 인도일: 2022. 5. 31. 2. 인도방법: (주)공정 담당자 ☆☆☆의 이메일 ☆☆☆@kongjung.co.kr을 통해 암호화 한 파일로 송부하기로 함. 파일 형식은 PDF 및 CAD로 각각 송부함. PDF파일은 1부 인쇄하여 (주)공정 담당자 ☆☆☆ 앞으로 우편으로 송부하기로 함.	
6)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기술자료 임치계약은 체결된 바 없음. 본 합의서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되어야 함.	
원사업자 (주)공정과 수급사업자 (주)거래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oo금형제작도면 초안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원 사업 자 명 (주)공 정 대표자 ○○○ (인) 수급사업자명 (주)거래 대표자 □□□ (인)	

III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1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개요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개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⁸⁾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용)** 2022. 2. 18.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8) 시행령 제7조의4

- (기한)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내용)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4)

2 비밀유지계약서 항목별 설명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⁹⁾

-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기술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¹⁰⁾

-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추정적인 기간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경과 후에도 기술자료를 지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합의하여 비밀유지계약서 변경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8조는 변경계약 관련 일반 약정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¹¹⁾

- 해당 기술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원사업자의 임직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단 기재 시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사번 등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3

1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2

-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후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 명단 변경 필요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명단을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8조 제3항 참조)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¹²⁾

-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점을 계약 내용에 명기하여야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비밀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¹³⁾

-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 목적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위반이 되는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또는 목적외 사용 시 배상¹⁴⁾

- 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 경우 배상 관련 내용을 약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행위로 수급사업자가 실제 손해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약금 또는 위약벌의 의미로 배상의무를 약정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¹⁵⁾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기술자료 사용기간 만료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반환 및 폐기의 입증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반환 또는 폐기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4조

1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3조

1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7조

15)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5조

○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¹⁶⁾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또는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특정하여 약정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

- 비밀유지계약서는 거래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고)

16)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4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및 작성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5항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동 조항에 근거 2022.2.15.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로, 제12조의3 제3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간 비밀유지계약체결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2022. . .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본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 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예시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2022. 4. 10. 납품한 발전기 용접사양서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발전기 용접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발전기의 용접사양과 철판두께 등을 확인하여야 하자의 원인 파악이 가능하므로 해당 하자 확인을 위해 위 자료 요구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유사 하자 발생 시 책임 및 배상 소재 파악을 위하여 위 자료를 요구함.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2022. 5. 31.부터 2022. 6. 15.까지

다만 하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내에 유사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해당 기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연장하기로 약정함.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022. 6. 16. 폐기하기로 함. 단,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폐기일은 그 연장된 날의 종료일의 다음날로 하기로 함.

폐기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은 도면은 복사본을 포함한 일체의 문서를 파쇄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함. 문서 파쇄 시 수급사업자가 전달한 원본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문서를 파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해당 영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함.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사장 홍길동	kdhong@kongjung.co.kr
2	팀장 ○○○(사번 1234)	○○○@kongjung.co.kr
3		
4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예시 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¹⁷⁾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 ○○ 제품 CAD 도면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과 다른 부품들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면이 필요함
- 발주처가 요구한 것과 동일한 사양의 부품인지 승인받기 위하여 부품의 세부 사양 확인이 필요함.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2020.11.17.부터 2020.12.21.까지.
다만 부품 조립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처가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연장하기로 약정함.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020.12.21., 즉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기하기로 함. 단,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폐기일은 수급사업자와 재협의하기로 함.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사장 홍길동	kdhong@kongjung.co.kr
2	팀장 ○○○(사번 1234)	○○○@kongjung.co.kr
3		
4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17) 앞의 기술자료요구서 예시 2의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작성 예시를 보여 주는 것임

IV

질의 응답

1

기술자료 관련

Q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사업자가 기본도면을 제공하는 등 제조방법 및 사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A1.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의 특성 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제공한 기본 도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2019누51675 판결, 대법 확정 2022두39178)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도면을 토대로 수급사업자가 도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부품 제조 위탁에 따른 대가도 지급하였음. 그렇다면 부품의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승인도는 원사업자의 소유가 아닌지?

A2. 부품 제조 위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지, 수급사업자의 노하우 및 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품 제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품 제조 과정의 노하우 및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승인도까지 원사업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2019누51675 판결, 대법 확정 2022두39178)에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의 제작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고, 이 사건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330호에서도 승인도 제공에 대한 대가가 전체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승인도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측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노무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계약의 최종 목적물로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A3.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술자료 요구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기술자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계약서 상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는 전제 하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Q4.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도면 자체를 이전받기로 한 상황에서 대금 지급 완료 전에 중간 산출물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경우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A4.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중간 산출물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 전에 받은 중간 산출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절차 또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VI. 3. 다. <예시 5>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를 기술유용의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자료를 목적물로 하는 계약일지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독립된 경제적 가치]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범용성이 없어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지?

A5.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유 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이를 보유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II. 5.는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19누51675 판결, 대법 확정)에서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가미된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6

[동종업계에 알려진 정보 및 자료]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지?

A6. 세부 사항에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Ⅲ. 5. <예시 4>는 전체적으로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18누77120 판결, 대법 확정)에서도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7

[비밀 표시를 하지 않은 자료]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된 또는 관리된 자료로 볼 수 있는지?

A7. 비밀표시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Ⅲ. 2.에 따르면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표시가 없다고 하여 바로 비밀관리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사지침 Ⅲ. 3.은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18누77120 판결, 대법 확정) 또한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하면서 비밀표시가 되지 않은 승인도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8

[타법령에 따라 작성 해야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자료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A8.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타 법령 상 의무와는 별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자료라도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 정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점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Q1

[기술자료 열람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경우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는지?

A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V. 1. 가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정당한 사유] 납품받은 제품의 사양,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그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므로 항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 아닌지?

A2. 당초 합의된 목적을 벗어나 유용 등을 목적으로 승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2019누51675 판결, 대법 확정)는 승인도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자료라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된 사용목적에 벗어나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유용할 목적으로 도면을 요구한 것은 승인도 제작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술을 교환 또는 공유할 필요성이 상당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거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는데 이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Q3

[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을 준수하여 위탁물을 제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A3.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V. 1. 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제조 등의 위탁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목적 달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법령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심결례에서도化粧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해당 수입국가관할행정청의 허가 목적 또는 물류업체(항공사등)에서 위험 성분 포함 여부 확인 목적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의결 제2021-008호 등), 화장품법 준수를 위해 품질관리자료를 요구한 경우(의결 제2023-040호) 관련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기술자료요구서 관련

Q1

[계약서 상 기술자료 요구 근거] 원사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계약서 및 품질보증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A1. 계약서 및 품질보증협정서 상 기술자료 요구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기술자료 요구 시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 법정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을 포함한 것 만으로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실제 기술자료를 요구하게 될 시점에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기술자료의 명칭 및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심결례(의결 제2022-105호)에서도 물품공급계약서 내 품질보증협정서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판단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Q2

[기재 내용] 기술자료요구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A2. 수급사업자가 요구받는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사업자가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비밀 침해 행위에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누68874 판결).

따라서, 기술자료요구서의 기재는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포함하면서 수급사업자가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성 예시는 본 가이드라인 II.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시점] 기술자료를 수령하고 나서 사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해도 되는지?

A3. 기술자료를 수령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요구서)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수령한 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한 경우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심결례에서도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일이 기술자료 수령일보다 1년 이상 늦은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부합하는 서면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의결 제2022-106호)한 바 있습니다.

Q4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수한 사정으로 기술자료요구서의 일부 항목을 미리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A4. 법정 기재사항은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 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함으로써 정당한 서면 교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 IV.1.(5) 예시2)

Q5

[통합 발급 가능 여부]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요구서만 제공해도 되는지?

A5. 통합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 법정 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료요구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별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 IV.1.(5) 〈예시3〉 참고) 다만 이와 같이 통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 기술자료 내역, 각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등 법령에 정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Q6

[전산시스템을 통한 교부] 원사업자가 내부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A6.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교부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교부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원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수급사업자는 의견 개진의 기회 없이 서명만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2021누68874 판결)에 유의해야 합니다.

Q7

[서명이나 기명날인] 대표자의 서명이나 원사업자의 기명날인 없이 다른 임직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A7. 기술자료요구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로, 서명자는 기재 사항이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V. 1. (5) 〈예시 1〉」는 원사업자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양사의 기명 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를 정당하게 서면을 교부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원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나, 원사업자의 임직원이 기술자료요구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Q1

[이미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비밀유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A1. 기존에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원사업자가 한 번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이후에 제공받을 기술자료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 위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항목으로 기재되는 기술자료의 명칭 범위, 사용 기간, 이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등 세부사항이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서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실제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시점에 비밀유지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원용하되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통합 체결 가능 여부]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비밀유지계약서만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지?

A2. 법정 요건에 따라 세부 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통합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은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지침 IV.1.(5) <예시3> 참고) 동일한 맥락에서 비밀유지계약서 또한 법정 요건에 따라 세부 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통합하여 하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제3자 기술자료 제공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제3자와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A3.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제3자와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3자에게도 비밀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2022년 2월 18일 제정·배포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3조 제2항 또한 “원사업자가 계약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임직원 명단 기재 관련] 법정 기재 항목 중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이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에는 매번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8조 제3항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별첨 항목으로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서 본문 제8조 제3항에서 별첨에 기재된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Q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의 의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개발과정에 참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존 기술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A1.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동일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 2017다34981)에서도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합의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Q2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동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A2. 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종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고법 2018누77210 대법 확정)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타 협력사에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승인도를 전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타 협력사들이 수급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타 협력사들이 제품 개발 및 공급을 포기하여 원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4.17.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유형이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합의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Q3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A3.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2019누51675, 대법 확정 2022두39178)에서는 원사업사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범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수준 결정, 손해배상금액 산정 등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법 위반 사례

의결번호	피심인	법 위반 유형			쪽
		요구	서면미교부	유용	
2018-339	두산인프라코어	O	O	O	50
2019-085	STX엔진		O		53
2019-136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O	O	O	55
2020-244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O	O	O	58
2020-306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O	O	61
2021-246	삼성중공업		O		63
2021-322	대우조선해양		O	O	65
2022-083	엘에스엠트론 및 쿠팡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	O	O	O	67
2022-106	삼성SDI		O	O	70
2022-126	쿠팡		O	O	73
2022-239	PHA	O	O	O	76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인정사례 일람

QC공정도	쿠팡	도면	두산	원재료 재질사양서	SDI
개선대책서	쿠팡	물질조성리스트	SDI	자체검사성적서	쿠팡
검사성적서	현대	부품검사규격	쿠팡	작업표준서	현대
고장상태영향분석서	SDI	부품목록	SDI	제조공정도	쿠팡
관리계획서	현대	사출성형조건표	SDI	제품사양서	쿠팡
단품도면	PHA	승인원	쿠팡	품질관리자료	SDI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8-339호)¹⁸⁾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외부공개 금지,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보안유지 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반출 시 승인 의무화, 대외비 관리, 보관장소 출입 통제, 열람 인원 제한, 파일 구현장소 제한 등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채용 시 비밀유지계약서 징구 등
- ISO 도면관리지침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제품 제작도면, 용접도면에는 제조·용접·조립·설계 방법,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부품의 소재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피심인이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미흡한 제품 제작 기술을 보완하도록 함

18) 대법 22.09.16. 선고 20두47021 판결로 확정됨

- 이 사건 승인도는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참고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

* 예시 : 외형 및 수치,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및 사양 등

○ 경제적 유용성 : 인정

-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며, 이를 입수할 경우 제품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노력,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음
-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제품 제작까지 가능한 상세 설계 도면이며, 기술능력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일부 위반

- 제품 제작도면, 용접도면 : 피심인은 하자 점검을 위해 이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해당 기간에 당해 기술자료가 요구되는 하자가 사실상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부인됨
- 승인도 : 이 사건 승인도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부품 및 전체 제품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승인도를 요구하여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음. 그러나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제작도면 및 용접도면은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승인도는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명목으로 들어 취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기의 이익인 단가 인하를 위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
-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이 급감하고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음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이에 대해 협의한 정황이 없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반함.

에스티엑스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085호)¹⁹⁾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기재함 : 외부 공개 금지, 저작권 및 소유권 주체, 보안 유지 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대외비로 별도 서버에 관리, 열람 인원 제한, 반출 시 승인 의무화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함
- ISO 9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기술자료는 승인도로서, 그 사용목적은 고려할 때 여기에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참고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

* 예시 : 외형 및 수치,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시험성적 또는 사양, 부품 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등

- 도면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일 필요는 없고,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로 인정됨.

19) 대법 21.10.28. 선고 21두45299 판결로 확정됨

○ 경제적 유용성 : 인정

- 도면에 주로 담겨 있는 정보가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준수

- 도면을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품 검수,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다른 부품과의 정합성 검토 등을 할 수 있음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9-136호)²⁰⁾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으며,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는 제조위탁 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불과함
- 계약서에 도면의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하도급대금에 도면의 설계·작성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도면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도면이 공동소유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별도 서버 등에 관리, 열람 인원 제한, 반출 시 승인 의무화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됨

20) 대법 22.06.30. 선고 22두39178 판결로 확정됨

- ISO 도면관리지침서, TS16+949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부규정 등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도면에는 부품목록, 부품의 크기·재질·수량, 전선의 위치, 분기점, 커넥터, 완성도 시험 검사 방법 및 합격기준, 작업노트, 결합위치, 전원회로 설계에 관한 사항, 충전스펙, 입출력 전압값의 안정화 범위, 냉각방식, 변압기의 종류, 회로구성 및 제어방식, 제작 노하우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다른 사업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일부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의 공동 소유이므로 이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이는 수급사업자의 비용과 노력에 의해 작성되었고, ②피심인이 제공한 사양은 제조위탁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사양에 불과하며, ③수급사업자들도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부인됨.
- 이 사건 승인도를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이 요구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후에 제공함.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도면을 자기의 이익인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
-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납품물량 감소, 거래단절 등의 손해가 예상됨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
- 이는 통상적인 업계관행이나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임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0-244호)²¹⁾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비밀관리성 : 인정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사내 자료의 외부 문서 유출을 통제·관리함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사내 보안규정, 비밀유지서약서 등
- 하도급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함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작업표준서**에는 작업조건, 작업도, 작업방법, 작업 시 주의사항 및 검사표준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개선자료**에는 작업 시 가공기구의 배치와 공차가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보고서**에는 공정별 중요 자재 구매선 목록, 외주협력업체 목록, 주요 작업원, 생산 및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생산 관리, 검사 검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관리계획서**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전체, 공정별 설비, 관리규격, 검사 주기, 검사기기, 관리 방법, 전체 공정의 흐름 등이 기재되어 있음

21)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 이 사건 **검사성적서**에는 제품 특정 부분이 치수와 공차,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치수가 기재되어 있음

* 검사성적서의 제출이 계약서에 따른 행위임은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에 불과함

- **개발 전후 비교현황**의 경우, 제작 검증 과정에서 주물사, 조형, 합형, 주 부자재, 구상화, 주입, 탈사, 열처리, 시험편, 표면처리 등의 검증 사항들의 최초 사양과 대비한 현재 결핍값이 기재되어 있음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특히 작업표준서, 개선자료, 검사성적서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작성한 자료임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일부 위반

- 작업표준서, 개선자료 : 피심인은 하자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이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피심인은 하자 발생 시점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를 요구하였고, ②하자가 발생한 모델과 피심인이 요구한 작업표준서 모델이 다르며, ③이미 관련 보고서와 수급사업자 방문을 통해 대책수립을 모두 한 이상 이를 요구한 것은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부인됨.
- 보고서, 관리계획서, 검사성적서 : 이로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 사양,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관리계획서, 품질검증, 개발 전후 비교현황, 검사성적서 등을 원가절감, 납품업체 이원화·변경, 납품단가 인하 등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
- 수급사업자는 납품물량 감소 및 거래단절 등의 손해를 입음
-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이에 대해 협의한 정황이 없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반함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0-306호)²²⁾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외부 공개 금지, 보안 유지 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 제한 : 별도 서버에 관리, 출력물 별도 보관, 열람 인원 제한, 반출 시 승인 의무화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 명시
- ISO 도면관리지침서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 관리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세부 부품 정보, 제작 방법 및 제조 주의사항, 제품 주요 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도면에는 수급사업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투입한 제작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다른 사업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등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2)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준수

- 도면을 통해 피심인은 발주처에 제출한 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부품을 공급받는지를 발주처에 승인받을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피심인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품의 설계를 위해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위치 등이 요구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 제작도면을 보관·제품 개선, 제품 납품 승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납품업체 이원화·변경, 납품단가 인하 등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246호)²³⁾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도면에 제출 목적, 작성(수급사업자) 회사명, 설계자, 로고, 설계일자, 작성회사, 설계자, 검토자 등 기재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본 도면은 ○○○의 재산으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를 금합니다”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별도 서버에 관리, 접근 인원 제한, 보관장소 출입 통제, 파일 구현장소 제한 등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회사 내부규정, 비밀유지계약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함
- ISO 9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23) 서울고법 22.10.27 선고 21누68874 판결로 확정됨

- 이 사건 기술자료는 승인도로서,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참고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

* 예시 : 외형 및 수치,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부품 소재 등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임
- 제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고,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생산·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음
- 구체적인 설계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준수

- 도면을 통해 피심인은 발주처에 제출한 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부품을 공급받는 지를 발주처에 승인받을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피심인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품의 설계 및 사후 수리를 위해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위치, 제작도면 등이 요구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기술자료의 제공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도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됨
- 서면에 관련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322호)²⁴⁾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도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이나 복사를 금한다” 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별도 서버에 관리, 접근 인원 제한, 보관장소 출입 통제, 파일 구현장소 제한 등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비밀유지서약서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함
- ISO 9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음
- * 예시 : 외형 및 수치, 제작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및 제품사양 등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다른 사업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등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4)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준수

- 도면을 통해 피심인은 발주처에 제출한 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부품을 공급받는지를 발주처에 승인받을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피심인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품의 설계를 위해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위치 등이 요구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제공함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평가 및 발주처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명목으로 들어 취득하였으나, 자기의 이익인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를 사용, 제3자에게 제공함

* 그 결과 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단기간 내에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을 납품함

-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해 피심인과 협의한 바 없으며, 피심인이 이 사건 도면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리라 예측할 수 없었음

엘에스엠트론(주)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083호)²⁵⁾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수급사업자는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포괄적·추상적인 타사의 제조기술을 치수, 각도, 가공 방법, 절개 개수, 절개도구 등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구체화함

○ 비밀관리성 : 인정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이를 핵심기술로 지정, 대외비로 관리, 관련 기술자료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별도 서버에 보관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됨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사내 보안관리규정 및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신고인이 당연히 비밀로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음

25)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도면에는 금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세부 부품의 구조, 치수, 절개개수, 치수, 각도, 금형 가공방법(레이저 커팅)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금형개발연구노트에는 금형 제작단계별 작업사진, 필요 장비, 재료, 부품 상세도면, 제조·실험방법, 실험 데이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이 사건 절개도 및 제조 공정별 사진에는 공정 및 가공 수단에 대한 설명, 가공법, 그에 따른 장점, 단계별 공정명, 작업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제품 설계도면, 절개도 및 제품 제조 공정별 사진을 다른 사업자가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음
- 이 사건 금형개발연구노트는 금형을 제작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와 생산에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료임
- 이 사건 절개도 및 제품 제조 공정별 사진은 피심인도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를 설명자료로 사용함
- 피심인 자신도 수급사업자의 가공방법을 성과로 홍보하고, 이를 사용하여 특허등록까지 받았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일부 위반

- 납품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품질검증을 위해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이에 관한 자료는 공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형개발연구노트 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금형개발연구노트를 제공받았으나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절개도 및 제품 제조공정별 사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는 데 사용함
-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이 사건 도면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리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임

삼성에스디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106호)²⁶⁾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제품 제조 승인원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점에 다툼이 없음
- 제품 제작도면 : 하도급법의 문언과 취지상,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수급사업자의 자료임

○ 비밀관리성 : 인정

① 제품 제조 승인원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승인원을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 반출 시 승인 의무화, 열람 인원 제한 등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 부과 : 비밀유지각서, 취업규칙, 내부 교육 등
- 피심인도 이를 비밀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

② 제품 제작도면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별도 서버에 보관, 열람 인원 제한 등

26)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 직원들에게 도면 등 회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교육함
- ISO 9001, ISI 14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피심인, 도면을 전달받은 제3자도 이를 비밀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승인원에는 물질조성리스트, 원재료 재질사양서, 부품목록, 품질관리자료, 작업표준서, 사출성형조건표, 고장상태영향분석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물질조성리스트에는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 부품 목록에는 세부 부품의 명칭, 구매처, 세부규격, 조립순서, 주의점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품질관리자료에는 흐름에 따른 제조 공정, 각 공정별 중점적 관리항목, 관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 관리장비, 각 공정별 사용설비, 규격, 관리기준 및 관리담당자,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작업표준서에는 품질 달성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외관실사도, 치수검사의 구체적 위치, 작업공정순서, 작업자 확인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사출성형조건표에는 사출공정 각 단계별 노즐의 온도, 사출속도 및 압력, 보압 수치 및 시간, 금형 전후진 속도 등 사출공정의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음.
- 고장상태 영향분석서에는 고장유형의 원인 및 영향을 적시하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도면에는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가령 여기에는 외형 및 수치, 부품의 재질 및 소재, 제작방법 및 제작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승인원 및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임

-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음
- 경쟁사가 제작도면 없이 이를 역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준수

- 제품 제조 승인원 : 승인원을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이 요구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다른 부품과의 정합성 검토 등을 할 수 있음
- 제품 제작도면 : 이 사건 도면으로 피심인은 하자의 원인을 확인하여 제거할 수 있고, 피심인에게는 그 필요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포괄적·추상적·총망라적 기술자료요구서 교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를 허용한 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날보다 상당한 기간 전에 서면을 교부한 것은, 협의를 통해 제공할 기술자료가 특정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협의만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단기간 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거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음
- 피심인은 일부 기술자료요구서를 사후에 제공함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 제작도면을 자기의 이익인 납품기간 단축 및 제3자의 이익인 제품 제작 노력 절감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
-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임

쿠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126호)²⁷⁾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승인원의 항목들 중 작성자가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됨
- 피심인이 제공한 기술자료와 기술지도를 기반으로 승인원이 작성되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투여되었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함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주의] 본 도면은 ○○○의 자산이므로 무단복제 및 외부유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사업장 출입을 엄격히 관리, 반출 시 승인 의무화 등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비밀유지서약서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제3자의 출입 제한내용 명시
- ISO 9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피심인도 비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

27)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당해 승인원에는 부품목록, 제품사양서,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QC공정도, 부품검사규격, 자체검사성적서, 개선대책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부품목록은 원사업자가 제시한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부품을 자신의 기술로 선정한 것임
 - * 설령 피심인이 부품을 결정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부품의 처리공정과 제조순서를 포함하여 부품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는 수급사업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임.
- 제품사양서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기술로 제품의 상세사양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함.
- 작업표준서는 작업방법, 작업사진, 검사기준,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제조공정도에는 제조공정, 각 공정에서의 중점적 관리항목, 관리를 위한 샘플링 방법, 관리장비, 관리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음.
- QC공정도에는 공정순서, 제조조건 관리항목(설비명, 치공구, 원/부자재,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및 주기), 품질특성 관리항목(품질특성, 규격, 확인방법, 빈도, 기록, 담당, 중요도, 이상 처리 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부품검사규격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로 결정한 것임.
- 자체검사성적서는 수급사업자가 설정한 검사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임.
- 개선대책서는 물품에 대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수급사업자만의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승인원은 피심인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입한 결과물이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음
- 이는 제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며,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음. 그러나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승인원을 자기의 이익인 단가인상 억제, 물량 이관 기간 최소화 및 제3자의 물품 제작을 위한 비용·시간·노력의 절약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
-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해 피심인과 협의한 바 없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사회 통념에 반함

피에이치에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239호)²⁸⁾

사건 개요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도면 우측 하단에 수급사업자의 회사명, 설계자, 검토자, 설계일자, 도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피심인 소속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 피심인 내부보고서, 피심인이 작성한 자산인수제안서 등에도 이는 수급사업자의 소유라고 기재하고 있음

○ 비밀관리성 : 인정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별도 서버 등에 관리, 열람 인원 제한, 반출 시 승인 의무화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됨
- IATF 16949:2016 인증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내부규정 등
- 피심인도 이를 PLM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비밀임을 알았음

28)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도면에는 외형, 수치, 제작 방법 및 유의사항, 부품 간 결합 위치, 소재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경제적 유용성: 인정**

-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작성한 자료임
- 타 사업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음
- 실제로 제품 제조, 생산, 영업활동에 사용됨

하도급법 위반 여부○ **법 12조의3 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일부 위반**

- 단품도면 : ①업계 관행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품도면은 요구되지 않고, ② 피심인은 도면수정 지원을 위해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도면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피심인은 도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이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하여는 도면 보유 여부만 확인하면 될 뿐 이를 수령할 이유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부인됨
- 승인도 : 이를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이 요구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다른 부품과의 정합성 검토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일부 단품도면 : 수급사업자의 부품 공급 지연으로 피심인과 협력사 간의 직접 거래 과정에서 승인을 위해 이를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법 12조의3 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법 제12조의3 4항(기술자료 유용 금지) : 위반

- 피심인은 이 사건 도면을 자기의 이익인 납품업체 이원화, 이관 기간 단축, 자산 인수 비용 감소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
-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이원화를 진행하고, 사전에 법률검토를 하는 등 피심인 스스로도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 이는 통상적인 업계관행이나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임

관련 법령

1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2021. 8. 17.>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2021. 8. 17., 2022. 1. 11.>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본조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11. 3. 29.]

2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2. 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 2. 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6의2. 삭제 <2022. 2. 15.>
 - 6의3. 삭제 <2022. 2. 15.>
 - 6의4. 삭제 <2022. 2. 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본조신설 2011. 6. 27.]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2. 2. 15.>]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술유효감시팀), 044-200-4650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1.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이하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이 심사지침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시 1〉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예시 2〉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나.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다)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익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시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3.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I.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작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작 가치가 있는 것

2. 제1호 본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4. 제1호 가 목에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5. 제1호 나 목 내지 다 목에서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작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자료가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작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작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6. 제1호 나 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IV.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 기재사항"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 동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 ②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제공 및 활용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이 때 "정당한 대가"는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신규 기술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기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5) 정당하게 서면을 교부한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면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한 경우

〈삭제〉

〈예시 3〉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2. 비밀유지계약 체결(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사용·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전에 제공된 경우에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적시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하도급거래의 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④ 기술자료 사용·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 행위의 예시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시 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이후 단계〉

〈예시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V.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02호, 2022. 2. 18.〉

이 지침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